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406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스페이스 살림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공사비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정산 분과 일반음식점 활용도 개선을 위한 내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함

나.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여성가족재단 추가 출연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규모 : 지하 3층, 지하 5층(대지 6,488㎡, 연면적 22,519㎡)

- 지원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 살림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사업

- 여성, 가족, 보육, 돌봄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
-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돌봄 지원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관리 등

다. 추경개요

1) 추경예산 : 253,560천원

※ 총 출연금액 : 15,205,489천원 (기정 출연금액 : 14,951,929천원 포함)

2) 추경필요성

- '20.10월 스페이스 살림이 준공되었으나, 스페이스 살림 건축물에 대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공사비 및 스페이스 살림 조성 공사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정산분 확보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20년 8월부터 스페이스 살림 내 수익사업인 일반음식점(단독 및 푸드코트형)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계속 유찰됨에 따라 장기간 공실로 인한 수입 손실 및 입주기업 직원들의 식당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공간 활용도 개선을 위한 내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여 총 253,560천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3) 추경예산 산출 근거

- 추경 요청액 : 253,560천원

- ▶ 스페이스 살림 건축물 무장애 인증 공사비 : 100,000천원
- ▶ 스페이스 살림 조성 하수도원인자부담금(미정산분) : 78,000천원
- ▶ 식당 내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비 : 75,56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손동기(☎ 2133-5008)